'제2윤창호법' 두달새 효과 입증

사망 65% '뚝'…음주사고 37.2%·단속 30.9%↓

심야시간대 감소 50~60대 사고 절반이상 줄어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교통사고와 사망자, 단속 건수가 모두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6월25일부터 8월24일까지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전년 같은기간 60명에서 올해 21명으로 65% 줄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 시행 이전 (1월~6월)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전년비 22.6%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확대됐다.

특별단속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전년 3145건에서 올해 1975건으로 37.2% 줄었다. 시행 이전 (1월~6월)에는 전년 동기비 26.9% 감소한 바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밤 10시~오전 4시)는 사고건수가 61.1% 줄어들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 음주사고가 절반 넘게 줄었다.

개정법 시행 이후 2개월 간 음주운전 단속건수도 30.9% 줄었다. 시행 이전(1월~6월)보다 감소폭이 커졌으며, 정지수치 단속 및 측정거부자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대(밤 10시~오전 4시)에서 음주단속 적발 건수가 63% 줄었고, 아침시간대(오전 6시~오전 10시)에서도 9.4% 감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뒤 지난해 음주사고 사망자 수가 21.2% 감소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처벌기준이 상향되면서 그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음주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잃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문화 개선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1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 음주운전 적발…"잘못했고 죄송" 사과

최순실 국정농단의 내부고발자로 잘 알려진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59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았으며,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차를 돌려 1㎞ 가량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46%로 측정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노씨는 SNS에 "음주단속현장을 인지하고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그 현장을 벗어났다"며 "힘들 때 응원해주시고 격려와 도움을 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했다. 잘못했고 죄송하다"고 적었다.

상반기 불법영상 46000건 삭제…1030명에 도움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지원센터)'에서 올 상반기에만 불법영상 4만 6000여 건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원센터의 2019년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1030명의 피해자에게 상담·삭제지원, 수사지원 등 4만9156건의 지원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원 실적(2018년 4월 30일~12월)인 3만3921건을 이미 상회하는 결과다. 실제 삭제지원건수는 지난해 2만8879건에서 올해 4만621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치됐다.

지원센터는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동안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수는 총 1030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885명(85.9%), 남성은 145명(14.1%)으로, 디지털 성범죄는 특정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별로는 연령을 밝히기를 원치 않았던 피해자를 제외하고, 20대가 229명(22.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10대부터 5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총 피해건수 1910건 중 유포 피해가 578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509건(26.6%)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총 삭제지원 실적은 총 4만6217건으로 2018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매운 고추 터널 속으로 27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에서 시민들이 고추로 만든 터널을 지나고 있다.

전복양식장 아니었으면…돌풍에 해상 표류 학생 141명 '아찔'

고무보트 14척 표류하다 양식장 구조물에 걸려 구조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인해 학생 등 141명이 탑승한 고무보트가 바다에 표류했다가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다행이 학생 등이 탑승한 고무보트 14척이 모두 인근 전복 가두리 양식장에 걸리면서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7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0분쯤 해남군 송지면 송호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나주의 한 중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나눠서 탑승한 고무보트가 강풍에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생과 교사 등 141명은 고무보트 14척에 나눠서 탑승한 가운데 척당 9~10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순찰을 돌고 있는 연안구조정과 경비정, 민간어선 등을 급파해 141명을 모두 구조했다.

보드체험 당시 해남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해상에는 돌풍이나 강풍 주의보 등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면서 고무보트가 육지에서 최대 500m까지 떨어진 가두리 양식까지 떠내려 갔다.

자칫 가두리 양식장에 고무보트 14척이 모두 걸리지 않았다면 구조에 시간이 걸리거나 고무보트가 파도에 더 멀리 떠내려 가면서 대형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인근에서 순찰을 돌던 연안구조정이 사고 지점까지 20분 만에 이동했고, 인근에 있는 민간어선과 수련원측의 안전관리선도 함께 힘을 보태면서 총 40여분 만에 학생 등은 안전하게 구조됐다.

안전하게 학생 등을 구조했지만 제도적인 허점은 여전히 나타났다.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법적으로 30대 미만의 고무보트 등 기구가 있을 때 안전관리선 1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수련원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같은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다행이 해당 수련원에서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배 1척과 제트스키 1척을 보유하고, 함께 이동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즉 안전관리선 1대가 의무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수련원이 안전관리선을 구비하지 않았어도 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슈 판결

공포의 사제 동행 영화관람 행사서 2시간 성추행 교사 '집유 2년'

법원 "반성의 기미 없다"…교사 혐의 부인

극장에서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A씨(30)는 지난해 9월 11일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 광주의 한 극장을 찾았다.

A씨와 학생들은 사제동행 영화관람 행사에 참석했고, 오후 6시30분부터 9시쯤까지 영화를 감상했다.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B양의 옆에 앉았고, 2시간여 동안 B양의 손을 만지거나 깍지를 끼는 등의 행동을 했다.

B양은 담임교사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고,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실로 인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고, 현재 교육부의 소청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B양을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B양이 화장실을 갔다가 오는 과정에서 자신을 피해 자리를 이동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B양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경위와 진술내용, 태도 등을 볼 때 A씨를 무고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이 없다"며 "A씨의 추행에 당황해 자리를 옮기지 못했다는 B양의 진술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양의 신고 의도를 의심하고 B양이 피해 사실을 지어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B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B양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인 A씨가 제자이자 청소년인 B양을 영화가 상영되는 2시간여 동안 추행했다"며 "두 사람의 관계와 추행 시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